

대한공증인협회 새 회규

회칙 일부개정회칙

2016. 11. 21.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6. 12. 5.)

1 개정(변경) 이유 [일부 개정]

2016. 3. 28.(월) 개최된 201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 선출 당시, 현재의 협회장 임기 2년은 신임 회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업무를 파악하여 익숙해질 무렵에 바로 임기만료가 되는 반면에, 협회장 직을 맡을 책임자의 물색이 용이하지 아니한 현실, 국제공증인협회의 경우 주요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 비하여 우리 협회장의 현행 임기 2년은 이들과의 적절한 교류 협력에 충분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협회장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와 같은 회칙 개정을 추진하라는 다수 대의원들로부터의 의견이 있어, 그 후속 조치로 협회 회칙상의 협회장 등 임원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7년도 정기총회일까지의 현행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도입하고자 함(현행 임원의 임기는 회칙 규정에 불구하고,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2 개정(변경) 내용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년’ 을 ‘3년’ 으로 한다.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협회장 등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전 회칙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7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대의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3년</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u>2년</u> 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3년</u> ----- -----.
제2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u>2년</u> (임원으로 선출된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29조(임기) ① ----- <u>3년</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